# 제62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5. 6. 30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## 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5. 6. 30. (월)

○ 출석위원(6명)

- 오균 행정사회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박선규, 이민창, 정진경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## Ⅱ. 상정안건

| 의안번호 | 상정기관 | 의 안 명 | 구 분 |
|---|---|---|---|
| 2025-227 | 식약처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| 심의안건 |

## Ⅲ. 회의 결과

○ (심의) **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**(식약처, 2025-227호)

| | |
|---|---|
| 소관 부처 | 식품의약품안전처 |
| 규제사무명 | **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정**(안 별표2, 별표4, 별표6) |
| 논의내용 | ○ **에토미데이트**는 **중추신경계에 작용**하는 물질로, **프로포폴과 유사**한 중독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**불법 유통·처방 등 범죄**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<br>- **의존성** 및 **오·남용 유발 가능성**이 **명확**하여, **향정신성의약품 지정요건에 해당**한다고 판단됨<br>○ **렘보렉산트**는 **부작용**과 **의존성**이 확인되어 **마약류로 旣지정**된 **수보렉산트**와 **유사한 계열**로,<br>- 임상시험 시 **졸피뎀과 유사**한 **약물 선호도**를 보이는 등 위해성이 없다고 **단정하기 어려움**<br>※ 마약류로 지정되더라도 법상 관리·보고 등 의무 준수 시 품목허가를 거쳐 합법적인 의약품 용도로 사용 가능함 고려<br>○ **엔-피롤리디노프로토니타젠 등 5개 물질***은 **UN 마약위원회**에서 마약류로 **신규 지정**된 것으로,<br>* △엔-피롤리디노프로토니타젠 △엔-피롤리디노메토니타젠 △에토니타제피프네 △엔-데스에틸이소토니타젠 △헥사히드로칸나비놀<br>- 우리나라는 가입된 **국제협약**에 따라 **UN**이 지정한 마약류를 국내법상 **마약류로 당연지정**하고 있음 |
| 위원회 결정 내용 | ○ **에토미데이트** 및 **렘보렉산트**는 **향정신성의약품**으로서 **마약류 지정**의 **타당성이 인정**되며,<br>- **UN**에서 **마약류로 지정**한 **엔-피롤리디노프로토니타젠 등 5종**도 국제협약에 따라 **「마약류관리법」**상 **마약류에 추가**할 **필요성이 인정**되는바, 원안동의 |